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6 부

### 판 결

사 건 2021구합662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정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수행자 이은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용식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9.

### 주 문

- 피고가 2021. 3. 30. 원고에게 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3. 피고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① 사건발생 학교명, ② 교육청 담당부서, ③ 신고 일시, ④ 신고 경로, ⑤ 사건개요, ⑥ 가해교원 경력사항, ⑦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⑧ 직위해제 일, ⑨ 감사실시 여부, ⑩ 감사기간, ⑪ 장학사 파견(조사) 기간, ⑫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⑬ 징계처리 결과, ⑭ 퇴직일 또는 복귀일, ⑮ 교육부 보고일, ⑯ 고발 여부, ⑰ 고발일, ⑱ 고발 기관, ⑲ 수사/재판 진행상황, ⑳ 피해학생 지원 여부, ㉑ 지원 기관, ㉒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위 정보 중 '⑲ 수사/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일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비공개처분을 하였고, '① 사건발생 학교명, ⑥ 가해교원 경력사항 중 학교명, ⑤ 사건개요 중 사건의 상세내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들 중 '사건발생 학교명'에 대한 비공개처분만을 다투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부분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회원으로서 교내 성폭력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만을 공개하면서 '사건발생 학교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도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개별 학교가 사건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가해자에 대한 직위제한이나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알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여 그 공개의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그 공개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만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교내 성폭력 사건에 관한 피해자, 피해사실, 가해자, 그 밖의 관계자들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처분사유의 추가 가능 여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

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 외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같은 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여 정보공개로 인한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참조) 반면,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이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처럼 위 각 규정에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는 근거와 입법취지가 모두 다른 점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처분사유와 이 사건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여

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7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민사회와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9, 10호증, 을 제12,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정보는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건발생 학교명'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와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일부만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한 채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과 같이 사건의 유형만을 간략히 기재하였고, 그 밖에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다른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사건발생 학교명'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해당 학교에서 어떠한 유형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만으로 곧바로 특정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미 알려진 언론기사나 SNS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할 가능성까지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언론기사 등의 존부 불분명, 개인 신상 특정 과정에 들어갈 시간·비용·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학교명만으로 쉽게 해당 개인을 알아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학교명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곧바로 어떤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거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는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 까지 쉽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스쿨미투 전국지도' 등을 제작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내지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혹시라도 원고가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이주영



판사

윤민수

윤민수



판사

박정미

박정미



열람용

[별지]

## 관계 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끝.

열람용

# 정본입니다.

2022. 5. 2.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권경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